|  |  |
| --- | --- |
|  | **MARYLAND**Department of Health |

**BEHAVIORAL HEALTH ADMINISTRATION**

**환자에 대한 입원 상태 및 권리 통지**

메릴랜드주 법률, 보건-일반 조항 타이틀 10 및 형사소송법 타이틀 3은 행동 건강 시설에 입원한 환자와 관련된 법률입니다. 본 문서는 해당 법령을 참조합니다.

보건-일반 조항(H-G), 타이틀 10 "정신 건강법", 서브 타이틀 6 "입원 조항", 서브 타이틀 7 "시설에 있는 정신병 환자의 권리", 및 서브 타이틀 8 “퇴원 및 이송”

형사소송법(C-P), 타이틀 3 “형사 사건의 무능력자 범죄 책임”

♦♦♦♦♦♦♦♦♦♦♦♦♦♦♦♦

시설에 입원한 후 12시간 이내에 시설 직원은 환자에게 다음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입원 근거 및 입원과 관련된 법률 조항[H-G, §10-631(a)(1)];
* 환자가 선택한 변호사와 협의할 권리[H-G, §631(a)(2)]
* 시설 내 환자의 권리[H-G, §§10-631(c) & 10-701—713].

상기 통지는

* 환자에게 제공해야 하고 환자의 상태 및 이해 능력에 적합하도록 영어 또는 기타 언어 및 용어로 읽어 주어야 합니다[H-G, §§10-631(c) & 10-701(f)].
* 환자가 통지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 환자의 부모, 보호자 또는 가까운 친척,
	+ 비자발적 입원 증명서를 근거로 환자를 입원했다면 시설 입원 신청서에 서명한 신청인,
	+ 환자 상태와 관련하여 중대한 이해관계에 놓인 사람에게 통지해야 합니다[H-G,
	§10-631(b)(2)].
* 자발적 입원을 위해 새롭게 신청할 때, 또는 비자발적 입원을 위해 새로운 증명을 제시할 때 환자에게 다시 통지해야 합니다[H-G, §10-631(e)].

**입원 상태의 통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은(는) 다음을 근거로 \_\_\_\_\_\_\_\_\_\_\_\_\_\_\_\_\_\_\_\_\_\_\_\_\_\_에

 환자 이름 시설명

입원되었습니다.

* 환자에게 자발적 치료 동의서를 읽어 주었으며 서명을 받았고, 환자가 16세 이상임(보건-일반 조항, §10-609),
* 환자의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자발적 치료 동의서를 읽어 주었으며 서명을 받았고, 환자가 미성년자임(보건-일반 조항, §10-610),
* 비자발적 입원에 대한 증명서 2개(H-G 조항, §§10-616—619),
* 치료 감호의 심리 결과(C-P 조항, §3-106)
* 법원 명령:

⬜ 재판을 받을 능력을 조사함(C- P 조항, §3-105),

⬜ 정신병으로 재판을 받을 능력이 없으며, 자신, 타인 또는 타인의 재산상 위험이 될 수
           있음이 밝혀짐 (C- P 조항, §3-106),

⬜ 형사 책임 및 능력을 조사함(C-P Article, §3-111),

⬜ 형사상 책임이 없음이 밝혀짐(C-P 조항, §3-112),

⬜ 병원 내 구속(C-P 조항, §3-121), 또는

⬜ 청소년에 대한 법원 명령.

입원 상태 및 권리를 통지하는 본 문서를 본인에게 읽어주고 설명했음을 증명합니다. 상기 권리와 관련하여 질문을 하고 추가 정보를 받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날짜 및 시간 환자 서명

▒▒▒▒▒▒▒▒▒▒▒▒▒▒▒▒▒▒▒▒▒▒▒▒▒▒▒▒▒▒▒▒▒▒▒▒▒▒▒▒▒▒▒▒▒

환자가 서명하지 않은 이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보건-일반 조항 타이틀 10 및/또는 형사소송법 입원 통지에 따라 입원 상태 및 권리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에게 통지했음을 증명합니다.

⬜ 부모, 보호자 또는 가까운 친척에게 통지함 ⬜ 통지하지 않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

 (직원 서명) (날짜) (시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정자체 직원 이름)

**환자의 권리**

**행동 건강 시설의 환자는 다음 권리를 보유합니다.**

♦ 환자의 치료 요구 및 해당 법률 요건에 따라 필요한 정도로만 환자의 개인 자유를 제한하도록 적절한 인도적인 치료 및 서비스를 받을 권리[H-G, §10-701(c)(1)],

♦ 개별화된 치료 플랜(ITP)에 따라 치료를 받을 권리

 [H-G, §10-701(c)(2)],

♦ 다음 사항을 제외하고 억제 및 격리를 당하지 않을 권리:

► 환자 또는 타인의 생명 및 안전이 위험한 응급 상황, 또는

► 치료 환경의 중대한 중단을 막을 목적[H-G, §10-701(c)(3)],

♦ 다음과 같은 유사 억제 또는 억제를 받지 않을 권리:

► 환자의 뒤에서 압력을 가함,

► 환자의 기도를 막거나, 환자의 호흡 능력을 손상시킴,

► 직원을 보지 못하도록 환자의 얼굴을 막음, 또는

► 고통을 호소할 환자의 능력을 제한함

 [H-G, §10-701(c)(4) & (5)]

♦ 정신적 학대, 신체 손상 및 성 희롱을 당하지 않을 권리[H-G, §10-701(c)(6) & (7)],

♦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 환자가 선택한 대변인이 치료 계획 및 퇴원 계획 수립에 참여할 권리:

► 환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재산 및 신탁 조항§13-705에 따르는 피후견인인 경우,

► 미성년자의 부모 또는 환자의 법적 대리인이 대변인의 불참을 요청할 경우,

► 대변인이 환자에게 법적 조언을 제공하는 변호사인 경우, 또는

► 대변인이 다음 행위에 관여할 경우:

 ◘ 환자, 다른 환자 또는 시설의 직원을 방해함, 또는

 ◘ 환자, 다른 환자 또는 시설 직원의 안전을 위협함[H-G, §10-701(c)(8) & (d)]

♦ H-G, §10-708 조항에 의거하여, 해당하는 경우, 정신 건강 의료 서비스에 대한 사전의료지시서를 선호도에 따라 치료를 받을 권리[H-G, §10-701(c)(9)]

♦ 시설에 대한 규정된 입원자 불만 처리 절차를 이용할 권리[*Coe vs Hughes,* COMAR 10.21.14],

♦ 의료적 사유로 인해 제한되는 않는 한, 서면 자료 및 우편물에 합당하게 접근할 권리, 우편물을
바로 발송하도록 조치할 권리, 수신인이 지시한 경우를 제외하고 개봉되지 않도록 할 권리[H-G,
§10-702(a)],

♦ 의료적 사유로 인해 제한되는 않는 한, 전화를 받기 싫다는 서면 통지를 제공하지 않았던 자에게 전화할 권리 [H-G, §10-702(b)],

♦ 적절한 시간에 선택한 변호사 또는 성직자를 방문하여 사적인 대화를 할 권리[H-G, §10-703(a)(1) & (2)],

♦ 의료적 사유로 인해 제한되지 않는 한, 적절한 면회 시간에 환자가 보고 싶어 하는 방문자의 면회를 받아 사적인 대화를 할 권리[H-G, §10-703(a)(3)],

♦ 재산에 투표하고, 재산을 수령, 보유, 처분할 권리[H-G, §10-704](주의: 의료 및/또는 보안상의 사유로 개인 재산에 대한 접근이 제한될 수 있음),

♦ 개별 치료 계획의 개발 및 정기적인 업데이트 과정에 참여하고, 적절한 용어 및 언어로 다음 내용을 들을 권리:

► 플랜의 내용 및 목적,

► 권장하는 치료의 성격 및 중요한 이상반응,

► 치료를 수행하는 의료진의 이름, 직위, 역할, 및

► 적절한 경우, 사용 가능한 대체 치료 또는 정신 건강 서비스[H-G, §10-706(c)],

♦ 시설에서 수행하는 육체적 침입 연구의 피험자 참여를 거부할 권리[H-G, §10-707],

♦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정신병 치료에 사용할 의약품을 거부할 권리:

► 환자가 환자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 또는 안전을 위험하게 하는 비상 상황에서 의사가
                투약을 지시한 경우, 또는

► 환자가 비자발적, 또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입원했으며, 임상심사위원회가 투약을 승인한
                경우[H-G, §10-708],

♦ 퇴원 전에 보건-일반 조항§10-809에 따른 요양 치료 플랜을 확립할 권리[H-G, §10-709], 및

♦ 거주형 주립 시설에 입원한 미성년자의 경우, 개별 치료 계획이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미성년자용 시설에 배치될 권리[H-G, 10-710].

♦♦♦♦♦♦♦♦♦♦♦♦♦♦♦♦

**정신 건강 서비스에 대한 사전의료지시서:**

메릴랜드주 법률, 보건-일반 조항, § 10–708에 따라, 환자가 메릴랜드주 법률, 보건-일반 조항,
§ 5–602.1에서 규정하는 정신 건강 서비스에 대한 사전의료지시서를 작성한 경우, 환자는 사전의료지시서의 선호도에 따라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H-G, §10-701(c)(9)].

♦♦♦♦♦♦♦♦♦♦♦♦♦♦♦♦

**비자발적 입원 증명서를 근거로 시설에 입원한 환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보유합니다.**

♦ 환자가 비자발적으로 입원 또는 퇴원해야 하는지 결정하는 행정 심리를 첫 구금 후 10일 이내에 개최할 권리. 타당한 사유로 심리를 7일 이하로 연기할 권리 및 연기 사실을 기록할 권리
[H-G, §10-632].

♦ 구금 사유 및 적법성을 결정하기 위해 관할 법원에 인신보호영장을 신청할 권리[H-G, §10-804],

♦ 환자가 환자 또는 타인을 보호하기 위해 입원 치료가 필요한

 정신병에 걸렸는지 판사 또는 배심원의 판단을 받기 위해

 법원에 시설의 사법적 석방을 청원할 권리[H-G, §10-805].

♦♦♦♦♦♦♦♦♦♦♦♦♦♦♦♦

**변호사에 대한 권리:**

행동 건강 시설에 구금된 사람은 선택한 변호사와 협의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구금자가 변호사를 구할 형편이 되지 않을 경우, 국선 변호인 사무국이 치료 감호 재판을 위한 법률 대리인을 선정해야 합니다. 변호사가 없는 구금자는 변호사가 필요한 구금자에게 변호사를 소개하는 법률 보조국, 변호사 의뢰 서비스, 메릴랜드 장애인 권리국 등의 기관에 연락할 수 있습니다. 구금자는 변호사 또는 의뢰 기관에 전화 또는 서신을 보내거나, 자신을 대신하여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하도록 할 기회가 있습니다[H-G, §10-631(a)(2)-(4)].

*Maryland Department of Health(메릴랜드 보건국)의 서비스 및 프로그램은 차별없는 치료를 기반으로 하며 1964년 Civil Rights Act(시민권리법) 제6부를 준수합니다. Spring Grove Hospital Center, 55 Wade Avenue, Dix Building, Catonsville, MD 21228의 Behavioral Health Administration(행동건강과) 과장 및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150 S. Independence Mall West, Suite 372, Philadelphia, PA 19106-3499의 Office of Civil Rights(시민권 사무국) 국장에게 차별 문제에 대한 불만을 서면으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